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2011. 08.08.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직원(단시간근로자 및 퇴직자 포함. 이하 “직원”이라 한다.) 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 서울대학교병원임직원행동강령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부서장(복무규정 제3조 제3호에 따른다)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직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총무과장을 통하여 병원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직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 받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결정) 병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금품수수 관련

유 형	금액기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1,000만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나.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다.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5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2. 부당한 직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5. 기타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은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은 병원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통보) ① 총무과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표 제1호 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병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범죄혐의 고발처리상황을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목인에 대한 책임) 병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목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54조 제6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침의 효력)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병원의 분원 및 수탁병원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직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				